●規 程●

電氣供給規程의 解說과 實務

(1)

金 鎭 成

韓國電力公社 營業處 營業計劃部 部長

Ⅰ. 電氣事業의 意義와 特性

1. 電氣事業의 意義

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기사업은 전기사업법상 「일반전기사업」과 「특정전기 사업」으로 구분되며 전자를 담당하는 자를 일반전기사업자, 후자를 담당하는 자를 특정전기사업자라고 칭한다.

일반전기사업과 특정전기사업은 주로 공급대상 및 범위를 기준하여 구분되는바 일반전기사업자란 공급구역내의 일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사업을 말하며, 특정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오로지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전기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특정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아 실 수요자인 일반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데 반하여 특정전기 사업자는 생산된 전기를 실수요자인 일반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 하나 뿐이며 특정전기사업자로서는 「산업기지 개발공사」와 「경인에너지」의 두개 회사가 대표적이나 최근에 소수력사업자와 일부 열병합 발전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사업이라 하면 통상 일반전기사업을 지칭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일반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전기사업의 특성등을 다루고자 한다.

2. 電氣事業의 특성

(1) 設備 事業

전기사업이 설비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라는 물건의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기는 첫째, 다른 물건과 달리 형상이 없는 무체물로서 관리에 특수한 방법을 필요로 하며, 둘째,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상업적 저장이 불가피하고, 세째 운반수단에 있어 생산지인 발전소와 소비지인 수용가가 전선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네째 취급상의 위험이 뒤따른다.

이러한 전기의 상품적 특성에 따라 전기사업을 영위하는데는 막대한 고정적설비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통상 전기사업을 철도, 체신사업 등과 더불어 설비사업이라고 한다.

(2) 地域的 獨占事業

일반적으로 자유경제체제는 기업간의 경쟁을 전

제로 하고 있으며 기업간의 경쟁을 통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적정 가격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의 경우 많은 고정적 설비를 신설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 데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일정한 지역에서 2개이상의 사업자가 서로 경쟁을 할 경우 각 사업자마다 별도의 공급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국가적으로 보아 불필요한 투자를 2중으로 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은 결국 제조원가의 상승요인이 되어 전기사용자는 오히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각국은 거의 예외없이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수개의 전력회사가 있으나 이들 전력회사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전기공급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 각자의 공급구역 내에서는 역시 독점권을 인정받고 있다.

(3) 公益事業 서비스事業

오늘날 가정생활로부터 공공서비스 및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한 것이어서 전기사업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 운영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의 하나 하나에 양질의 전기와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인 동시에 전형적인 서비스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된다.

(4) 國家의 基幹産業

현재, 국가의 산업활동 특히 생산활동은 풍부한 전기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즉 전기사업은 모든 생산활동에 기초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 한나라의 국력 내지 경제규모는 전기설비의 량(전기공급능력)에 따라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전력은 모든 산업활동의 필수불가결한 동력원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은 어느 국가에서나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 政府의 規制

위와 같이 전기사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요, 공익사업이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인정 받고 있다. 따라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을 자의적으로 운영시킬 경우 전기사업자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의 전횡으로 수요자 위에 군림하거나 안일하고 비능률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 내지 공익사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국익과 공공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공사법, 예산회계법, 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법 등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Ⅱ. 電氣 供給 規程

1. 電氣供給規程의 意義

전기공급규정이란 전력회사가 일반의 수요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할 때 전기요금과 기타의 조건을 규정(공급규정 제1조)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력의 수급 양자가 전력을 공급하고 사용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전력은 생활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국가경제의 기초에너지 산업으로서 전국민이 곧 전력을 그 생활에 이용하게 됨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요청에 적합토록 정부의 규제를 받아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 합법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그 운용에도 공정하고 공평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전기공급규정 제1장 총칙은 이 규정의 의의와 특성 및 법적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으로써 전기공급규정 전반에 걸친 총괄적 부문이다.

전기의 사용 형태는 극히 다종다양하다. 따라서 수 많은 수용가는 수용가마다의 특별한 방식으로 전력을 수전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개의 수용가와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그 때마다 따로 협의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력사업은 공급설비의 특성상 지역적 독점이 불가피하게 인정되고 있음에 따라 모든 수용가에

게 적정한 요금으로 차등없이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요금 기타의 공급조건을 정형화한 「공급규정」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급규정이 모든 수용에 대해공평성과 요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된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는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수급계약도 상품의 양도에 따른 권리, 의무의 발생을 가져오므로 개인 대 개인간에 자유 의사를 통한 상호협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경제사회의 확대발전으로 동형의 거래가 대량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거래의 신속화와 능률화의 시점에서 중요한 일반원칙을 따로 추려 거래조건을 미리 정한 「약관」이 곧 공급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약관은 미리 공표되어야 하고 (전기사업법 제16조) 계약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때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특히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규정은 일반적인 약관의 성격에 사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내용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인가를 의무화하였고, 인가된 규정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정부는 명령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電氣供給規程의 性格

전기공급자는 일반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회사 단일회사이나 전기의 수요자는 700만에 가까운 광대한 숫자이다. 숫자면에서 뿐 아니라 전기의 사용 용도도 천차만별이어서 개개의 수용가와 거래 발생시마다 조건을 정한다 할 때 조건의 상이에서 오는 공평성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며 실제 운영면에서도 비능률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전기는 공급 후 특정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히 거래관계가 존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초 공급시 거래의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히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업무처리의 능률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 많은 수용가와 공평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사전에 거래조건을 정형화한 것이 공급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사업자와 수요자간에 거래관계를 정형화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제고시키는 일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제정을 전기사업자에게 일임하지 않고 정부가 인가 또는 명령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기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공익성위배나 임의적인 변경을 금하여 놓고 있으며 특히 인가된 규정이외 조건의 경우는 정부의 승인없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지어 놓았다.

이와 같은 전기공급규정은 전기의 거래관계를 포괄적으로 정형화한 일응 부합계약의 약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부합계약의 약관은 상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가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한전의 경우는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고 실행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내용을 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기공급규정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합계약의 약관으로 간주하고 구속력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는 이도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볼 때 제정 개폐는 통상 전기 사업자가 주체가 되나, 최종적인 인가는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내용이 불적정한 때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변경 개폐가 이루어 지는 점을 인정한다면 전기 거래의 질서를 규율하는 전국민적 규범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電氣供給規程의 制定과 變更

현행 전기공급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제한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

전기공급규정의 개정은 동규정의 제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전기공급규정이 개정되면 즉 계약된 수용가라 하더라도 변경된 전기공급규정에 의함은 물론이다. 다만 개정된 규정의 효력은 계속 공급계약의 특성상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4. 電氣供給規程의 適用과 例外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동자부장관이 허가한 공급구역내의 전 수용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동자부장관이 허가한 공급구역이라 함은

한전법 제정 취지나 현 운영실태를 참작할 때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수용가라 함은 현재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될 사용자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수용가는 이 공급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 규정에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기공급규정이 비록 전기의 거래관계를 포괄하여 정형화한 것이라고는 하나 복잡다기한 전기 거래관계를 전부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기공급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은 규정의 취지에 따라 수용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거래 당사자인 우리 공사와 수용가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구체적 특별한 경우에까지 획일적으로 전기공급규정의 공급 조건을 적용할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심히 형평을 잃은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공급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電氣供給規程의 編制

현행 전기공급규정은 1983년 8월 31일 동자부장관의 인가 (전정1371-6716)를 받아 실행하고 있는 규정집으로서 현재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부분적인 내용 개정이 있어 왔다.

편제로 보면 4장으로 구성되고 제1장에 총칙을 두어 본규정의 성격을 정하고 근거법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에서 전기의 공급절차와 전기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3장에서 전기요금의 적용방법과 요금의 계산 및 전기요금 종별을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요율표는 별책으로 하고 있다. 제4장은 신규 또는 전기사용 등 설비의 변경에 따르는 공사비의 계산기준과 부담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전기의 수급거래를 4개장으로 정하였다.

제1장 총 칙
제2장 전기의 공급 및 사용
  제1절 수급계약의 성립, 변경 및 폐지
  제2절 계약최대전력및 계약전력결정
  제3절 공급방법 및 공사시공
  제4절 전기의 사용 및 공급
  제5절 전기사용의 보안
제3장 전기요금
  제1절 전기요금의 계산 및 지불
  제2절 계약종별 분류기준
제4장
  제1절 공사비 담당
  제2절 표준공사비
  제3절 설계공사비
부 칙

Ⅳ. 電氣事業法과 電氣供給規程의 連繫性

전기공급은 사용형태가 다양하며 극히 많은 수용가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경우마다 전력수급 계약을 협의 결정함은 업무의 양면에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집행자 자의에 의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력수급에 따른 공통적인 제 조건을 정형화한 것이 전기공급규정이라고 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전기공급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 제1항의 정한 바에 따라 제정 및 변경이 이루어지며 이는 전기공급에 대한 기본적 조건에 대하여 정부가 사전검토 인가하는 것으로 전기사업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기수요자가 어느 경우이든 차별이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전기사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전기사업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적용되는 전기공급규정에 정해진 범위안에서 제한없이 전기를 공급할 사회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전기사업법 제4조).

또한 공급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공급받기를 희망하거나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급규정 제5조) 원칙적으로 공급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조건은 실효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